

보도시점 2025. 4. 30.(수) 12:00 (2025. 5. 1.(목) 조건)

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!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.

- 실업급여·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('25.5.1.~5.31.) 운영
-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(6월~7월) 실시 예정

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. 이 기간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고용장려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(부정수급)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.

자진신고와 제보*는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)이나,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, 팩스,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,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.

*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,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

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부정수급액·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도 면제*될 수 있도록 하며,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**을 감경한다.

* (제외) 공모형 부정수급,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

** (지급제한기간)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

또한,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,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%를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%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.

〈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〉

실업급여	▶ (서울 ㄱ씨)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(2개월 이내)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 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▶ (경기 ㄴ씨)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▶ (경북 ㄷ씨)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
육아휴직급여	▶ (경기 ㄹ씨, 충북 ㅁ 사업장) 친·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▶ (전북 ㅂ씨, ㅅ 사업장)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
고용안정	▶ (서울 ㅇ 사업장)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 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,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▶ (강원 ㅈ 사업장)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
직업능력	▶ (서울 ㅊ 훈련기관) 훈련기관(기관장, 강사, 행정직원) 또는 함께 훈련 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▶ (경기 ㅋ 훈련기관) 훈련기관 관계자(행정직원, 교강사 등)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

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(6~7월)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
이정 한 고용정책실장은 “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희 (044-202-7349)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	책임자	과 장	신재경 (044-202-7227)
		담당자	사무관	정호태 (044-202-7305)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세희 (044-202-7470)
		담당자	사무관	장지훈 (044-202-7412)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조형근 (044-202-7307)
		담당자	사무관	윤주희 (044-202-7318)



1.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- 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)이나, 팩스,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.
-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,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,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?

- 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,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,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·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,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
3.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- 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,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□ 지급대상

-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고용장려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(부정수급)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)

□ 지급기준

-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~30%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)

구분	포상기준	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	하한액
실업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 (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,000만원)	1만원
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	
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	부정수급액의 30%	3,000만원	

□ 지급제한

-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)

-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
- ② 공무원(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)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
-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
-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